

중국에서의 이전가격 및 고신기술기업 자격 인증

고신기술기업자격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 및 받은 기업은 그와 관련한 이전가격의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고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는 이전가격 정책의 관점에서 더 많은 이익을 향유해야 함을 의미하는바 양자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국적기업의 중국 자회사의 경영진은 언제나 현지 기업이 중국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신기술기업이 현지 기술소유자로서 비교적 낮은 기업소득세 세율을(기업소득세의 법정 세율은 25%)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 정부 또한 해당 지역의 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해 고신기술기업에 대해 적극 장려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고신기술기업 자격 신청은 다국적기업 본사의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 실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은 이 문제에 대해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고신기술기업 자격의 신청 여부에 대해 현지 및 그룹의 경영진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의견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을 제정함과 동시에 고신기술기업의 세무혜택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을까요? 본 문건은 고신기술기업 신청 조건과 중국 이전가격 실무의 최근 발전 추세에 근거하여 상기 문제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신기술기업 자격의 인정 조건

중국 기업소득세 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고신기술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을(현행 법정 세율 25%) 향유할 수 있습니다. 몇몇 과거 세무 혜택이 (예를 들면, 전통적인 이면삼감반 세무 정책)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게는 이와 같은 고신기술기업의 세무 혜택은 매력적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 기업은 반드시 최근 3 년내에 자주적인 연구개발 혹은 외부 구매 등 방식으로 동 기업 주요 제품(서비스)의 핵심 기술에 대해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소유해야 함.
-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기술 인원이 당해 기업 총 직원수의 30% 이상이며, 그 중 연구 개발 인원이 당해 기업 총 직원수의 10% 이상이어야 함.
- 기업의 최근 3 개년 회계 년도의 연구 개발 비용 총액이 판매수입 총액의 일정한 비례를 차지해야 함 (예를 들면, 최근 일년 판매수입이 2 억원이상의 기업일 경우, 3% 이상).

현지 경영진과 그룹 경영진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게 되는 원인

현지 경영진과 본사의 그룹 경영진이 상반한 의견을 갖게 되는 원인은 우선 양자가 재무 및 세무 관리에 있어서 업무 핵심과 주의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지 경영진은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한 후 향유하게 되는 세무 혜택, 고신기술기업이라는 이미지 및 지방 정부와의 양호한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그룹의 경영진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이 본사 측면에서 존재하는 잠재적인 세무위험과 글로벌 범위 내에서의 실제 세무 부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해당 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신청하는 것을 격려하는 주요한 원인은 해당 지역의 고신기술기업의 업체수가 지역 경제발전의 판단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 정부가 해당 지역 상업 활동의 여러 행정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지 경영진은 지방정부와의 양호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신청하려 합니다. 그 밖에도, 고신기술기업의 인증은 기업이 고객 및 기타 이익 관계자들에게 선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양호한 기업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신기술기업 인증(특히 현지 기업이 핵심 기술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구)은 그룹의 글로벌 경영 측면에서 동 기업의 역할 정립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아래 도표는 현지 경영진과 본사 그룹 경영진의 중점 관심사의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지 경영진	본사 그룹 경영진
지방 정부와의 양호한 관계	관심 많음	현지 경영진에 비해 관심 적음
고신기술기업 이미지	관심 많음	현지 경영진에 비해 관심 적음
중국 기업소득세 우대 세율	관심 많음	현지 법인세 세율은 글로벌 실제 부담 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에 불과 함
그룹 이전가격 정책	그룹 경영진에 비해 관심 적음	관심 많음

고신기술기업 인증이 가져다 주는 효익으로 인하여 현지 경영진은 조직 구조 등에 대해 필요한 조정을 진행하고 유관 서류를 준비함으로써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신청하려 합니다. 하지만, 고신기술기업 자격의 인증 표준은 실무적으로 명확하지 않으며 인증 표준에 대한 이해와 집행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핵심 자주 지적재산권 요구를 예로 들면:

- 국과발화[2008]362 호문은 핵심 자주 지적재산권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핵심 자주 지적재산권은 발명, 실용 신형, 제품 도안과 형태를 비교적 간단하지 않은 수준으로 개변한 외관 설계, 소프트웨어 저작권, 집적회로 설계 특허 및 식물 신 품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상기 설명에 의하면, 기술 노하우와 기타 비등기류의 지적재산권은 자격 신청에 있어서 핵심 자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과학기술 성과전환 능력" 심사에 있어서 기술노하우는 포함됩니다.
- 고신기술기업 자격의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해, 현지 경영진은 종종 기업이 소유한 지적재산권을 "핵심" 기술로 분류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룹 차원에서 핵심 지위에 있지 않는 지적재산권도 분류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현지 기업의 특허에 속하는 제조 과정 최적화 기술이 가치상 그룹이 소유한 기초적 기술에 비해 많이 미달되지만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핵심 자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핵심 지적재산권 이외에도, 고신기술기업의 기타 인증표준에 있어서도 상이한 관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요구에 부합되는 직원 수, 연구 개발 항목, 연구 개발 비용 구성 및 고신기술제품 (서비스) 수입의 계산 등에서 이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신기술기업 자격 인증 표준의 불명확성과 정부기관이 심사과정 중에서 수행하는 잠재적인 판단의 차이로 인해 기업은 그룹 이전가격정책 관점에서는 소유하고 있지 않은 핵심 지적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고신기술기업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 핵심 지적재산권으로 간주하여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룹 관점에서, 중국 현지 기업은 그룹의 핵심적인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단순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글로벌 이전가격 정책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이윤만 향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비밀상적인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거래순이익법을 통해 해당 부류의 기업이 향유해야 할 이익 수준을 확정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조세회피방지부문이 고신기술기업의 이전가격 합규성(合规性)에 대해 심사를 진행할 때(이러한 심사는 고신기술기업자격을 취득한 후 진행¹) 해당 기업의 성격과 고신기업의 위치는 그룹의 전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중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이전가격 지침에 의하면, 거래순이익법은 기업이 관련거래에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동시에 특별한 공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적용됩니다².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동등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적인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거래순이익법은 일상적인 기능 및 위험 내의 이익수준은 확정할 수 있지만 특정 지적재산권에 상응하는 수익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협력기구 이전가격 지침과 유사하게, 중국 이전가격 법규에서도 한가지 이전가격방법의 사용은 반드시 기업이 관련 거래 중에서 수행하는 기능, 부담하는 위험 및 사용하는 자산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세회피방지 업무보고 중에서도 지적재산권은 국가세무총국이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영역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유엔 개발도상국 이전가격 조작문건>> 중에서 국가세무총국은 재화기업이 "중국에서의 경영을 통해 획득한 기술과 경험은 다국적기업의 원시 무형자산의 개량에 대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³이라고 하였습니다. 실무상, 지방세무기관도 고신기술기업의 혜택에 대한 효익으로 고신기술기업이 단순기능의 이익보다는 높은 이익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¹ 중국세무기관은 관련 거래가 발생한 년도로부터 10 년내에 이전가격 조사와 조절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² <<경제협력기구 다국적기업과 세무기관 이전가격 지침>>(2010 년 판), 2.4 및 2.59 단락

³ <<유엔 개발도상국 이전가격 조작문건>> 10.2 장(중국)

이외에, 국가세무총국의 담당자에 의하면 세무기관은 고신기술기업을 더 많이 주목하여 관련 거래에서 사용하는 원가가산 가격제정 정책이 합리적인지 심사하고 있습니다. Deloitte 역시 일부 지방 세무기관이 고신기술기업이 해외 관계사에게 지불하는 특허권사용료에 대해 질의하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지방세무기관은 고신기술기업이 이미 핵심기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한테 특허권사용료를 더 이상 지불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케이스를 경험하였습니다.

한편, 그룹 경영진은 반드시 그룹의 이전가격정책을 글로벌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룹 내의 중국 현지 기업이 핵심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본사는 글로벌 사업 모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사는 자회사의 기능과 위험정위(定位)의 변화가 잠재적으로 간주되는 것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잠재적인 도전을 걱정하게 됩니다. 고신기술기업 자격 신청 과정에서 존재하는 불명확성 및 세무문제에 대한 불확정성으로 인해 그룹 경영진은 현지 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신청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해 현지 경영진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전가격 정책의 수립과 고신기술 기업의 세무 혜택

이론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은 기업의 실제 상황, 완전한 기능 및 리스크 분석에 기초하여 제정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소유권을 평가할 때, 현지 기업이 그룹 핵심 기술의 연구 개발에 대한 실제 공헌을 증명,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고신기술기업의 세무 혜택과 발생 가능한 이전가격 리스크에 대해 비교 및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현지 기업이 그룹의 핵심 기술 연구 개발에 기여한 경우, 다국적기업은 상응한 이전가격 정책을 적용하여 현지 기업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하며 동시에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신청하여 세무 혜택을 향유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고신기술기업 자격과 무관하게 현지 기업은 거래순이익법하의 단순 기능기업의 이익률보다 높은 이익률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지 기업은 무형자산에 대한 공헌이 많기 때문에 세무기관은 그 이익률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으며, 이때 고신기술기업 신청자료를 포함한 유관 서류(본지 연구개발 활동과 무형자산의 중용성에 대해 과대 평가하지 말아야 함)와 본사와의 이전가격 정책의 조정 등에 관해 상세히 심사하고 고려해 봐야 합니다.

고신기술기업 인정 조건이 모호한 상황에서, 만약 현지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활동이 그룹의 핵심 연구 개발 활동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신기술기업의 인정 성공 확률이 얼마이던지 간에 고신기술기업 자격 신청 전 이전평가관점에서 잠재적 리스크를 평가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지 기업이 고신기술기업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기능과 위험 배분이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업은 글로벌 이전가격정책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orean Service Group in Shanghai

徐祖明 파트너

Jeff, Xu

Tel: +86 21 6141 1278

Email: jexu@deloitte.com.cn

함지원 이사

Ham Jiwon

Tel: +86 21 6141 1468

Email: jiham@deloitte.com.cn

최근호 이사

Choi Gun Ho

Tel: +86 21 2316 6237

Email: guchoi@deloitte.com.cn

@ 위 내용은 기본 내용을 번역한 것으로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업무 담당자에게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